

주식회사 스마트로 기명식 보통주식 장외매수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스마트로(“당사”)는 당사의 주주인 귀하로부터 아래와 같이 장외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귀하는 아래 장외매수 청약기간 내에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인 신한투자증권 주식 회사를 통하여 아래에 정한 조건으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외매수자 등의 현황

가. 장외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당사(주식회사 스마트로)

나. 장외매수자에 관한 사항 (2026. 08. 05. 기준)

① 장외매수자의 최대주주: 비씨카드 주식회사

② 장외매수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수: 없음

2. 장외매수(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가.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효율적 자본운영을 위하여 당사 주식에 대한 장외매수를 진행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나. 당사는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사는 금번 장외매수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께 투자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 당사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당사 주식에 대한 장외매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당사 주식 처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실 주주들께서는 금

번 장외매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외매수 예정주식 등의 종류와 수

가. 장외매수 예정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회사 스마트로 기명식 보통주식
193,160주

나. 장외매수 예정수량을 모두 매수하였을 경우 장외매수자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의 수: 193,160주

4. 장외매수 가격 및 그 산정방법

가. 1주당 장외매수 가격: 금 144,000원(현금지급)

나. 산정방법: 동종업계 상장사 상대가치 평가(PBR, EV/EBITDA),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고려한 금액

5. 장외매수대금 총액 한도: 금 27,815,040,000원

6. 장외매수 청약기간: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 (총 26일간)

7. 장외매수대금 결제일 및 결제방법

가. 결제일: 2026년 10월 15일

나. 결제방법

- ① 장외매수대금은 결제일에 청약주주가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 ② 주식회사 스마트로 발행 주식은 결제일에 청약주주의 계좌에서 장외
매수자의 장외매수용 계좌에 입고됩니다.

8. 주식회사 스마트로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비씨카드 주식회사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805,464주	64.5%
합계			805,464주	64.5%

※ 2026년 8월 5일 기준

9. 주식회사 스마트로의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재무현황			손익현황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220,807	42,042	178,765	252,864	2,407	2,723
2024년	239,600	53,625	185,976	205,227	4,584	7,274
2025년	232,430	49,429	183,001	215,771	(5,441)	(2,414)

10.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에 대한 사항

가. 장외매수 사무취급자: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나. 주관부서: CIB그룹 IB종합금융부, 기업금융영업부

다. 담당자 및 연락처

① 강병현 이사(02-3772-2264)

② 김영현 선임매니저(02-3772-3831)

11. 장외매수의 청약 방법

가. 청약신청 장소: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온라인 및 MTS(신한 SOL 증권)

나. 청약 방법 등

- 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위탁계좌에株式이 있는 주주께서는 주주 본인이 직접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 및 MTS(신한 SOL 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HTS 불가).
 - 주주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외국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한 상태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자필로 청약신청서 작성(대리인 청약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
 - 법인/조합 주주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여 주주 본인의 법인 인감 날인 후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거래인감 지참하여 방문
- ②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아닌 타 증권사의 위탁계좌에株式이 있는 주주께서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장외매수에 응할株式을 대체입고 시킨 후 청약신청서를 작성,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에 제출하고 청약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③ 장외매수 청약기간 중 신청 마감은 16시이며, 청약기간 종료일(2026년 10월 13일)에는 15시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 ④ 청약주주는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2026년 10월 13일)까지 언제든지 장외매수 청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청약을 접수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해당 영업점을 재방문하시어 청약 시 교부 받은 청약확인서 및 자필로 작성한 청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 및 MTS를 통해 장외매수 청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추가적인 세부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지점

으로 내방 또는 신한투자증권 고객센터(1588-0365)로 문의 가능합니다.

다. 대금 지급 등 기타 안내사항

- ① 당사는, 총 193,160주(제3.가항 참조) 범위 내에서, 귀하께서 청약 신청한 주식에 대해서 장외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약기간 종료 시까지 청약 신청된 주식수(청약 취소 신청된 주식수 제외)의 합계가 회사의 취득예정 주식수(193,16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3,160주를 청약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귀하께서 신청하신 주식의 수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 버림)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 ② 당사와 주주님 간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에 따라 청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 ③ 청약기간 만료 후 대체입고 될 확정 수량을 통지 드릴 예정이며, 확정된 수량은 결제일(2026년 10월 15일)에 당사 보유 증권 계좌로 대체입고될 예정입니다.
- ④ 주식양도가 확정된 수량에 대해 1주당 144,000원을 지급받으실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건 장외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당사는 본건 장외매수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므로, 주주께서 지급받으시는 매수대금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은 결제일에 지급받으실 매수대금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세의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의제배당 소득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주주께서 신한투자증권 주식 회사에 개설하신 위탁계좌의 잔고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약 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⑦ 다만, 계좌 잔고에 반영된 취득단가가 실제 취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주식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지참하시어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취득단가를 정정하신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MTS를 통한 취득단가 변경은 조회 화면상 표시에만 반영되므로, 의제배당 소득 산정을 위한 정정은 반드시 영업점을 통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⑧ 이미 청약을 신청하신 이후 취득단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을 취소하신 후 취득단가를 정정하시고 재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계좌 잔고상 취득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액면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⑩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당해 주주(들)에 대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2) 그러한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주주(들)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주주의 경우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원천징수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주주로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원천징수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는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일자: 2026년 8월 31일

주식회사 스마트로

대표이사 장 길 동 [직인생략]